

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270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4년 10월 16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매입임대주택 공급 및 신규사업 추진 등으로 서울시의 지속적인
출자가 예상됨에 따라 조례상 수권자본금 한도를 상향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수권자본금 한도를 8조원에서 12조원으로 상향(안 제5조제1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공기업법」

나. 예산조치 : 협의완료(예산담당관 협조)

다. 협의사항

- (1) 법무담당관(규제심사): 규제없음
- (2) 예산담당관(비용추계)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
- (3) 감사담당관(부패영향평가): 평가제외
- (4) 양성평등담당관(성별영향평가): 개선사항 없음
- (5) 평가담당관(공공갈등진단): 갈등사항 없음

(6) 조직담당관(위원회 신설): 해당없음

(7)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·본부·국 검토
의견: 해당없음

라. 기타

(1) 입법예고(2024. 8. 22. ~ 9. 11.) 결과: 의견없음

(2) 신·구조문 대비표: 붙임

※ 작성자 : 주택실 주택정책과 박슬기 (☎ 2133-7014)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 공기업법」 제49조”를 “「지방공기업법」 제49조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8조원”을 “12조원”으로 한다.

제7조제2항 중 “「지방공기업법시행령」”을 “「지방공기업법 시행령」”으로 한다.

제16조제6항 본문 중 “범위 내”를 “범위”로 한다.

제41조 중 “범위 안”을 “범위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택지의 개발과 공급, 주택의 건설·개량·공급 및 관리 등을 통하여 시민의 주거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「지방공기업법」 제49조에 따라 서울주택도시공사를 설립하고, 공사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「지방공기업법」 제49조----- ----- ----- -----.
제5조(자본금) ①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8조원으로 하고 서울특별시(이하 "시"라 한다)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. ② (생략)	제5조(자본금) ① ----- ----- 12조원----- ----- -----.
제7조(등기) ① (생략) ② 공사의 설립등기와 그 밖에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「지방공기업법시행령」(이하 "령"이라 한다)에 따른다.	제7조(등기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「지방공기업법 시행령」----- -----.
제16조(이사회) ① ~ ⑤ (생략) ⑥ 비상임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 출석 등에 따라 회의참석수당, 여비 등 실제비용 이외에 예	제16조(이사회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 ⑥ ----- ----- -----

산의 범위 내에서 이사활동에
필요한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
할 수 있다. 다만, 시장이 지정
하는 당연직 비상임이사에 대해
서는 월정액을 지급하지 아니
한다.

⑦ (생 략)

제41조(공무원의 파견·겸임) 시
장은 공사 사장의 요청에 의하
거나 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의
지원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
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 정
원의 100분의 5의 범위 안에서
한시적으로 공무원을 공사에 파
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.

--- 범위-----

-----.

-----.

⑦ (현행과 같음)

제41조(공무원의 파견·겸임) --

----- 범위-----

-----.

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매입임대주택 공급 및 신규사업 추진 시 발생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에 해당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 ① 의원·위원회·시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·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3. 미첨부 사유

수권자본금(서울시 출자금) 중 매입임대주택 공급 비용은 차기년도 예산편성 시 계획하나 국토교통부 지원규모에 따라 최종 결정되며, 신규사업은 비정기적으로 발생하여 현 시점에서 비용추계가 어려움

4. 작성자

주택실 주택정책과 박슬기(2133-7014)